

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종전 도시농업활성화 주요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, 도시농업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 함(안 제4조)
- 나.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(안 제5조)
위원의 자격 : 성북구의회 의원, 도시농업 업무 소관 국장,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
- 다. 기타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해촉, 수당 등 규정(안 제6조 ~ 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도시농업위원회)
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(도시농업 위원회의 운영 등)

, 같은 법 시행령(별첨)

나. 합 의 : 해당없음

다. 예 산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2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
- 3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일부 반영
- 5)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전부 반영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